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 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단가 입찰계약)
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3.(목) [17:00] ~ 2026. 9. 28.(월) [10:00]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3.(목) [17:00] ~ 2026. 9. 28.(월) [10:00] ※ 단가입찰계약
구매예정수량	총220명 2027학년도 중1 신입생 110명, 고1 신입생 110명 예정 (인원변동될수있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입생 신청에 따라 구매수량이 최종 확정됨. 남학생, 여학생 수량도 추후 신입생 신청에 따라 확정함. 품목별 구입은 학생 선택임. 계약기간 1년. *문의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사양	붙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동복 · 하복 · 생활복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	₩ 1,042,950원(동복 235,530원/하복 93,990원/ 생활복 713,430원) 부가세포함, 치수재기포함, 단가입찰 빅타이(또는 리본)을 1인 1회 무상제공하여야 함 경기도 교복 구매 상한 가격을 준수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품목별 단가표를 “원” 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선정 업체는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차기 교복 구매계약 체결 완료 전]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일	2026. 9. 28(월)~10.2(금) 중 실시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중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동복 : 2027. 2.15. 하복 : 2027. 5.15.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학교지정장소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품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23%)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38%이내
	셔츠/브라우저	동복 1벌 금액의 18%이내
	조끼	동복 1벌 금액의 16%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7%이내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동복 1벌 금액의 3%이내
	동복 소계	
하복 (9%)	셔츠/브라우저	하복 1벌 금액의 47%이내
	바지/치마	하복 1벌 금액의 53%이내
	하복 소계	
생활복 등 (68%)	가디건	생활복 1벌 금액의 8%이내
	야구복 점퍼	생활복 1벌 금액의 11%이내
	후드집업 동복	생활복 1벌 금액의 9%이내
	후드티1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후드티2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맨투맨티1	생활복 1벌 금액의 5%이내
	맨투맨티2	생활복 1벌 금액의 5%이내
	생활복바지검정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생활복바지회색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반바지 정장 신사복	생활복 1벌 금액의 7%이내
	후드집업 하복	생활복 1벌 금액의 7%이내
	개량하복 반팔상의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생활복반바지1	생활복 1벌 금액의 4%이내
	생활복반바지2	생활복 1벌 금액의 4%이내
	라운드티1	생활복 1벌 금액의 3%이내
	라운드티2	생활복 1벌 금액의 3%이내
	라운드티3	생활복 1벌 금액의 3%이내
	생활복 소계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학생의 경우 치마/바지를 처음부터 선택 가능 (여학생의 경우 바지나 치마 한쪽을 강요하지 않으며, 치마/바지 선택 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제출방법, 입찰 참가자격, 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규격심사 및 제안서의 효력,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및 이행, 기타사항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 및 계약은 “단가계약” 임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최종 확정’임.
 - 구매 품목의 구성품, 기초금액, 납품기한을 준수
- **품목별 구입은 학생 선택임**
- 학생(신입생, 전입생, 재학생 등)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함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최종 낙찰자의 제출된 샘플은 학교보관 명시(추후 교복 납품 검사 검수 시 활용)
- 교복 규격(소재, 혼용률, 색상, 디자인 등) 준수해야 함
-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입찰 참가 사업자는 단위학교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 ‘교복 학교주관구매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 명시
- 제조년월(최초착용년도)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교복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Q마크 검사기준 품질인증서 및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A/S계획(무상기간, 출장여부, 수선점과의 거리, A/S내용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제출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제시하도록 입찰 공고 내용에 포함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 등 가능함
- 입찰 공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할 수 있음
- 입찰 공고를 포함한 「학교주관구매」 운영 상 모든 계약 절차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2. 입찰서 제출방법

-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생활복 규격서」 [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낙찰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 접수 ⇒ 블라인드 심사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 별도 통보) ⇒ 계약체결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본 입찰공고문 1쪽에 기재 (1.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본인제출 아닌 경우 위임장 지참(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 2) [붙임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 3) [붙임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0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4)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 5) [붙임 8] 교복제조, AS 관련시설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 6)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 7) [붙임 10] 교복 A/S계획서 1부(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 8)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 후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9) [붙임 14]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라. 유의사항

-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의 효력

-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본 입찰공고문 1쪽에 기재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제안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 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입찰집행관 PC에서 실시

-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관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약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국가기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 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계약이행 시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서류의 제출

-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 관계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납품시점)
- 바. 납품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7일 이내에 행정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나.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제품사양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시행규칙),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마.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 바.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

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구매 계약 특수 조건은 선정된 업체와의 협의 하에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응찰한 업체가 낙찰되지 않더라도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접수 시 제출한 「입찰참가 신고서」를 근거로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업체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가 부정당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부정당업체가 차년도 본교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응찰할 경우 규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교 행정실(☎ 031-589-8822, 계약관련사항), 학교안전교육부(☎ 031-589-8844, 교복사양관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 붙임 1.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3. 입찰 참가 신청서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5. 교복 납품 제안서
6. 교복 A/S 계획서
7.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9. 교복 제조 사양서
10.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1.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2. 서약서
13.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5. 위임장
16. 품목별 단가표
17. 확인서
18. 개인정보취급위탁보안서약서

19. 개인정보파기서약서

20.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교복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수량, 납품기한 및 장소)

-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 ② 계약물품(교복)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5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15일까지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 가능하다.)
- ③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 ④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학교주관 구매 가격으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에 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교복 치수 및 측정)

-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

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판정 후 납품한다.
- 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감(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료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또한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교복·생활복의 상태)

-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땀의 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굵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밀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⑦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 ⑨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품질검사)

-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 ②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고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년월일,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구매 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선 사후관리)

-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줘야 한다.
-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3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A/S 지정매장을 명시하고, 중도에 지정매점이 폐업을 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며, 1년에 2회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종합적인 A/S를 하여야 한다. (연간 A/S계획일정은 학교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수요자”의 학생 및 학부모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수익자부담경비로 선금 지급 불가함에 유의.

제10조(수량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공급자”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 ②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한 경우
- ③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수요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13조(계약불이행 등)

-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 내용 해석, 소송관할)

-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자격제한)

- ① 본교에서 제시한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자격 제한

제19조(추가협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의하여 추가요청 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 ①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낙찰단가×구매예상인원의 100분의 15), '품목별 단가표' 제출.
- ② 납품 시점에 납품완료 후 3년 동안 하자보수 또는 A/S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복에 사용하는 문양은 "공급자"가 제시한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학교 교복 이미지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교복 안감 문양은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교복에 사용되는 문양에 대해 학교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공급자"는 이로 인해 학교 측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④ 교복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 제작 사양에 관한 요구사항은 현품 설명회 시 논의된 내용에 준하여 시행한다.
- ⑤ 공급자는 학교 인근에 위탁판매소를 지정하여 운영(1년 이상)하고, 위탁 판매업소 및 수선집 지정 증빙서류(연락처 기록)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실행은 제안서에 제시한 납품실행 계획서대로 이행한다.
- ⑥ 교복 사이즈나 치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 오후부터 익 일까지 "공급자"가 학교에 상주하여 측정한다. 이 때, 학생들이 신체의 치수를 원활하게 잴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여 실시한다.
- ⑦ 교복 기장 줄임은 "수요자"의 학생이 개별로 실시하되, 차후 줄임이나 늘림 등은 "공급자"가 위탁한 수선업체에서 무상 A/S로 처리 한다. (본인과실로 인한 수선, 멧내기 줄임 등은 수요자 부담)
- ⑧ "공급자"는 학년 초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여분의 교복을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⑨ "공급자"는 교복을 개별 포장하여 납품하고, 납품 시 3명 이상의 직원을 학교에 상주토록 하여 납품 및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⑩ 기타 학교 측의 요구가 있을 때 "공급자"는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⑪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입찰공고문을 준용한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A형)

*** A형 예시: 국내 제조 및 국내산 원단 섬유 사용 제품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

본 평가표는 20○○학년도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00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00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5
		4건 ~ 7.5건	3
		3.5건 이하	1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4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15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명서	7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명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	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8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주관 적 평가 (50점)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6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4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0
	주관 적 평가 (5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수행 능력 평가 (100점)	주관 적 평가 (50점)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0
			미흡	3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가점/감점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전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범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	해당 시	-10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 리	혼용률 차이±10이상 혼용률 차이±15이상	-5 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관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	품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23%)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38%이내
	셔츠/브라우저	동복 1벌 금액의 18%이내
	조끼	동복 1벌 금액의 16%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7%이내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동복 1벌 금액의 3%이내
	동복 소계	
하복 (9%)	셔츠/브라우저	하복 1벌 금액의 47%이내
	바지/치마	하복 1벌 금액의 53%이내
	하복 소계	
생활복 등 (68%)	가디건	생활복 1벌 금액의 8%이내
	야구복 점퍼	11%이내
	후드집업 동복	9%이내
	후드티1	6%이내
	후드티2	6%이내
	맨투맨티1	5%이내
	맨투맨티2	5%이내
	생활복바지검정	6%이내
	생활복바지회색	6%이내
	반바지 정장 신사복	7%이내
	후드집업 하복	7%이내
	개량하복 반팔상의	6%이내
	생활복반바지1	4%이내
	생활복반바지2	4%이내
	라운드티1	3%이내
	라운드티2	3%이내
	라운드티3	3%이내
	생활복 소계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제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범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범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입찰참가신청서				
개요	공고번호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64호		
	건명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구매		
신청인	상호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FAX)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신분증 지참)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4) 교복 A/S 계획서. 5)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7) 교복 제조 사양서.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9)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0) 서약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2)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붙임 15) 1부. 13)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 인감 날인) 1부. 14)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각 1부. 16) 의류시험성적서 1부. 17) 한국섬유산업협회가 국산 원단임을 인증하는 계약서 사본 1부. 18)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동복, 하복) 견본 각 1벌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견본품은 학교에서 보관함)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업체명) : (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 .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아래 표에 기재) (별지로 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납품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
5. A/S 계획(별지 첨부 가능)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주) 붙임11 실적증명서, 붙임 12, 13 서약서는 제안서에 같이 철하지 마시고,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부터 까지)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편의성

-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00 km)
-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00 분/시간)
-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4.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 가. 주 소:
- 나. 연락처:

5. A/S 내용

-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 · 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〇〇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〇〇학 교 장 귀 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본 업체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 ③ 재고 확보 방안
-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⑦ 기타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남학생 교복

견본 품목 (남학생)		섬유 혼용률(재질)	기타
교복 (동복)			
교복 (하복)			
생활복			

2. 여학생 교복

견본 품목 (여학생)		섬유 혼용률(재질)	기타
교복 (동복)			
교복 (하복)			
생활복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없다()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불가능()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교복을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 040 010

작성자: (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중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4]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붙 임 :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첨부함.
신분증 지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 1. 건 명 :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벵타이 가격 포함, “원” 단위 절사)

<동복>

품 목 (남학생)	가 격(원)	품 목 (여학생)	가 격(원)
합 계		합 계	

<하복>

품 목 (남학생)	가 격(원)	품 목 (여학생)	가 격(원)
합 계		합 계	

<생활복>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합 계		합 계	

20〇〇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확 인 서

_____ 업체에서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이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교복 사양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서는 즉시 구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반납 및 환불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제작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세부 사양서에 맞는 교복을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적합한 교복의 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계약 업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사양서를 준수하여 제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의 「학교주관 교복 구매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

서약인 :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9>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_____(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수탁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관련 제작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공급완료 기간까지(학년도말)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수탁자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수탁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소:

기관명: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대표: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인)

수탁자

주소:

상호:

대표: (인)

-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수탁자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